



근로자의 평안한 노후준비를 위한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한계와 극복방안

2016. 5월

本 강의안에는 발표자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주장과 일반사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의안의 모든 내용은 발표자에 개인 의견으로서 발표자의 소속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강의내용은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I.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현황

II.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이 나아갈 방향

III. 바람직한 가입자교육 사례



I.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현황

1.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관련 법규

I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2조2항 사용자 책무

②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32조1항

1.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 나.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다.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 라.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 마.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 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 사.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 나.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 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 라.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획서 및 이행 상황
- 마.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 나. 법 제23조에 따라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 다.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 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1.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관련 법규

I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 III. 가입자교육

3-1 ①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제2항에 의해 사용자와 가입자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2 ② 사업자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가입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가. **대면교육** : 가입자의 지식과 경험을 고려한 내용으로 가입자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장소 및 시기를 선정하여 실시
- 나. **온라인교육** : 가입자들이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여 실시하며, 교육 수강에 있어 가입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 서비스를 제공
- 다. **서면교육** : 교부, 우편 등의 방법으로 가입자가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작성하여 실시
- 라. **전자우편교육** : 가입자가 제공한 이메일 주소로 가입자가 이해하기 쉬운 내용의 자료를 송부하여 교육 실시
- 마. **상시게시** : 가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사내 통신망 또는 사업장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교육 실시

3. 퇴직연금 가입자의 현실

I DC 도입회사의 현실

01

DC 도입 시 사업자 선정이 Hot ISSUE

02

선정된 DC사업자에 대한 평가 및 변경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03

우리회사 DC 가입 임직원 수익률이 어떠한지 잘 모른다

04

DC는 근로자와 퇴직연금 사업자가 다 알아서 할 것이다

3. 퇴직연금 가입자의 현실

I DC 가입 근로자 개인의 현실

01

퇴직연금에 대해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

- 원리금보장상품으로만 운용, 회사가 부담금 납입, 퇴직시점까지 장기

02

퇴직연금 자산관리 할 시간이 없다

- 업무시간 = 금융회사 영업시간

03

금융자산관리에 대한 지식이 없다

- 모든 가계자산은 배우자가 관리

04

자산관리에 대한 정보가 항상 부족하다

- 퇴직연금사업자 → 회사가 선정 & 퇴직연금정보 전달 → 법정교육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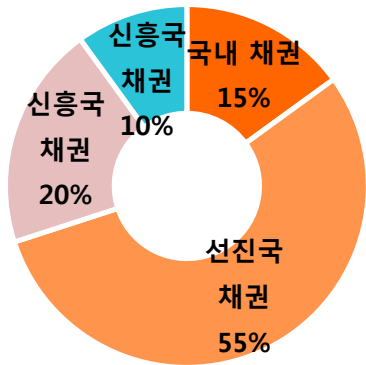
인출시점에 따라 퇴직급여의 변동성이 매우 크다

- 언제 찾느냐에 따라 자산수준의 급격한 차이 존재

3. 퇴직연금 가입자의 현실

Best Case

홍**, 36세, 적극형, 4천3백만원 → 글로벌자산배분



- / 2007.3월 퇴직연금 가입
- / 2011.2월 자산배분 개시
- / 분기단위 투자상품 검토
- / 분기단위 리밸런싱

Worst Case

김**, 36세, 적극형, 5천6백만원 → ABC펀드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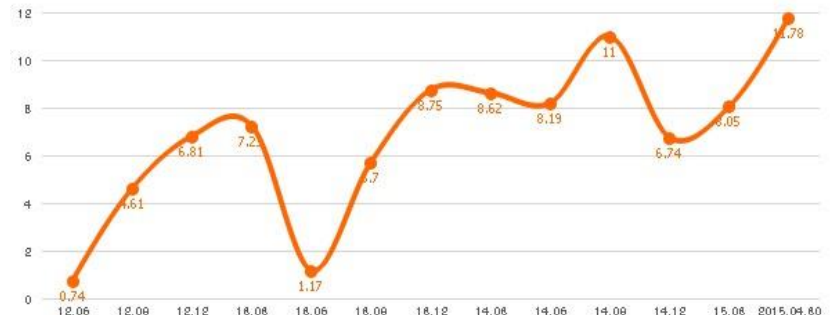


- / 2011.12월 퇴직연금 가입
- / 가입시부터 1개펀드 가입
- / 국내 only 투자
- / 성과부진 알림 SMS 및 상담부스 운영에도 무반응

최근 3년 수익률 추이 (연평균 7.14%)



최근 3년 수익률 추이(연평균 3.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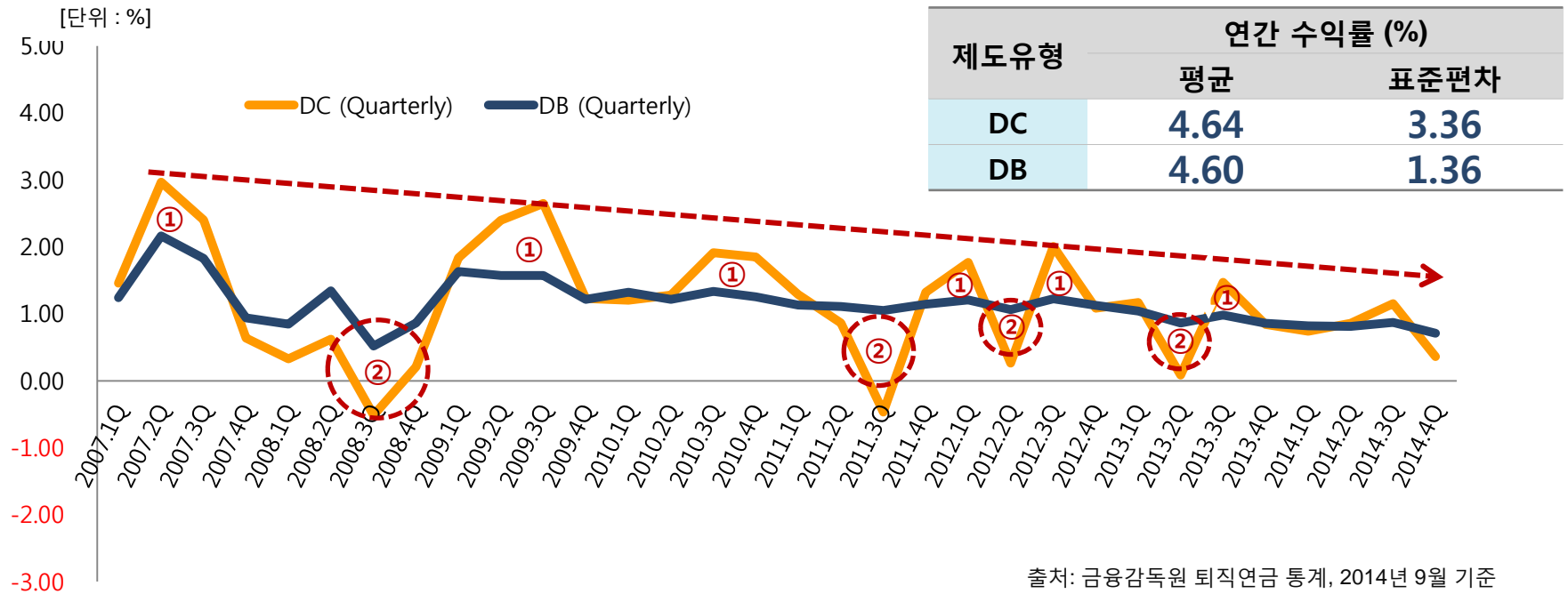



3. 퇴직연금 가입자의 현실

DC 수익률은 퇴직시점, 적립금 인출시점에 따라 변동성 高

- ❖ DC 수익률은 DB 보다 높지만, DC 수익률 변동성은 DC 대비 2.5배 수준
- ❖ DB, DC 수익률 모두 2009년 1Q 이후 지속적인 감소

퇴직연금 도입 이후 분기 별 평균 수익률 (전 사업자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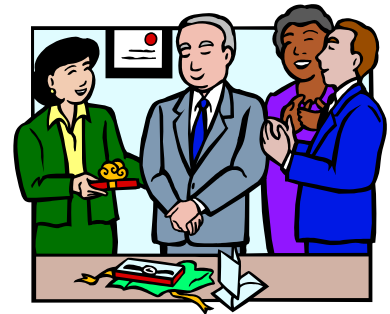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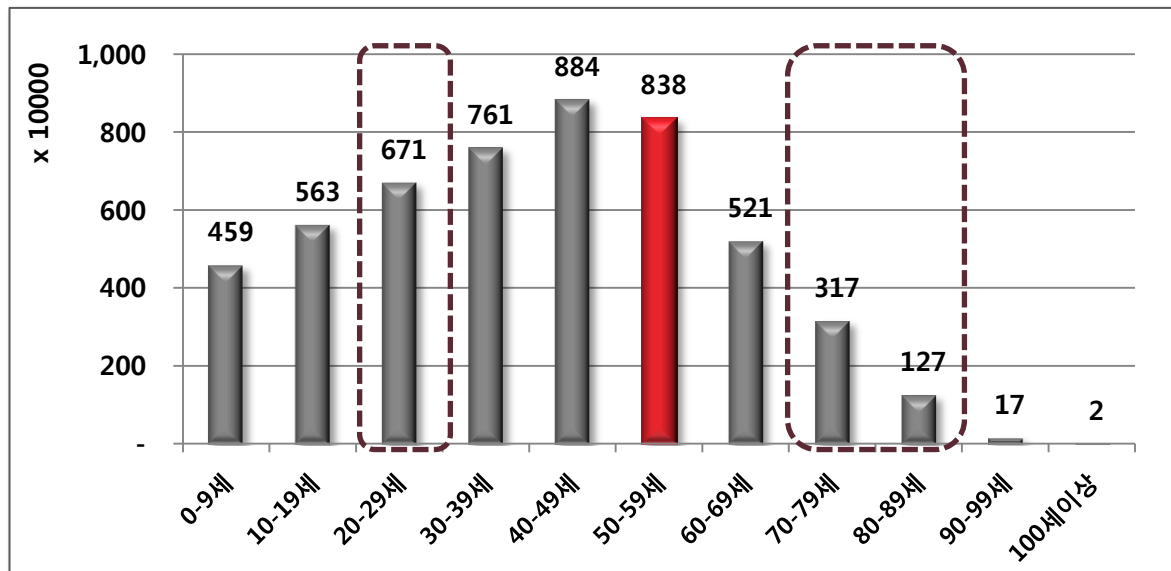
II. 근로자가 직면한 미래와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1. 근로자가 직면한 未來

❖ 베이비붐세대의 은퇴 →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인구 약 2,000만명

- ❖ 베이비부머는 1955~63年生(올해 53~61세) 의미, 전체 인구의 약 14%(712만명) 차지
- ❖ BB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포함, 총인구(5,150만명)의 약 39%에 엄청난 영향 추정(부양가족 1.8人 가정)
- ❖ 불행히도, 대한민국 청년실업자수(15~29세) 108만명 (2016.4월 고용동향)

[2016.4月 연령별 인구분포(萬名,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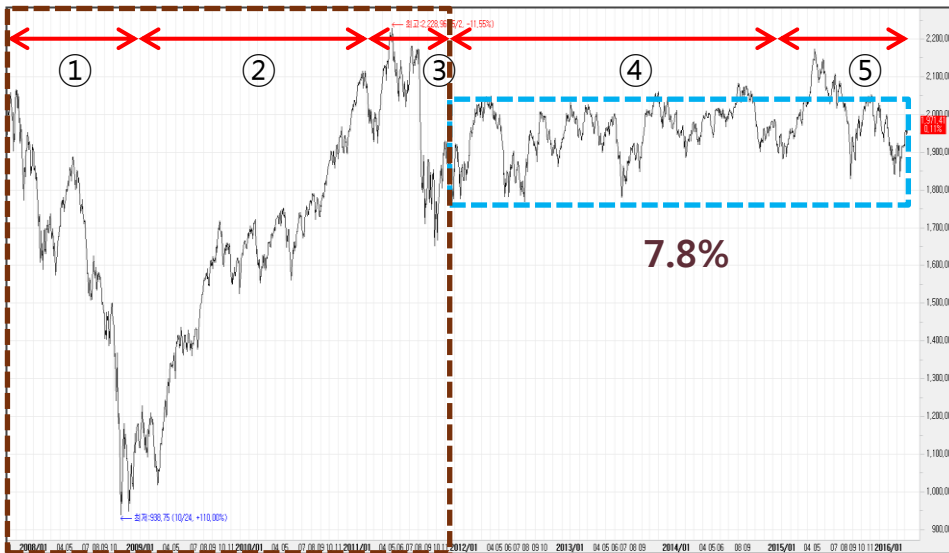
1. 근로자가 직면한 未來

I 국내시장의 경우, 일본式 저성장, 장기침체 우려 대두

❖ 반면 글로벌 선진시장의 경우, 우리나라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非동조화

- ①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에 의한 글로벌금융위기
- ② 2009년~2010년 KOSPI 2년간 운용성과 66.86%
- ③ 2011년 미국신용등급강등, 유럽재정위기
- ④ 2012년~2016년 KOSPI 1800~2050 박스권에 정체
- ⑤ 2015년 초 KOSPI 잠시 반등 이후 다시 박스권, 미국시장 상승기조 정체

국내 종합주가지수(KOSPI) 추이



미국 S&P 500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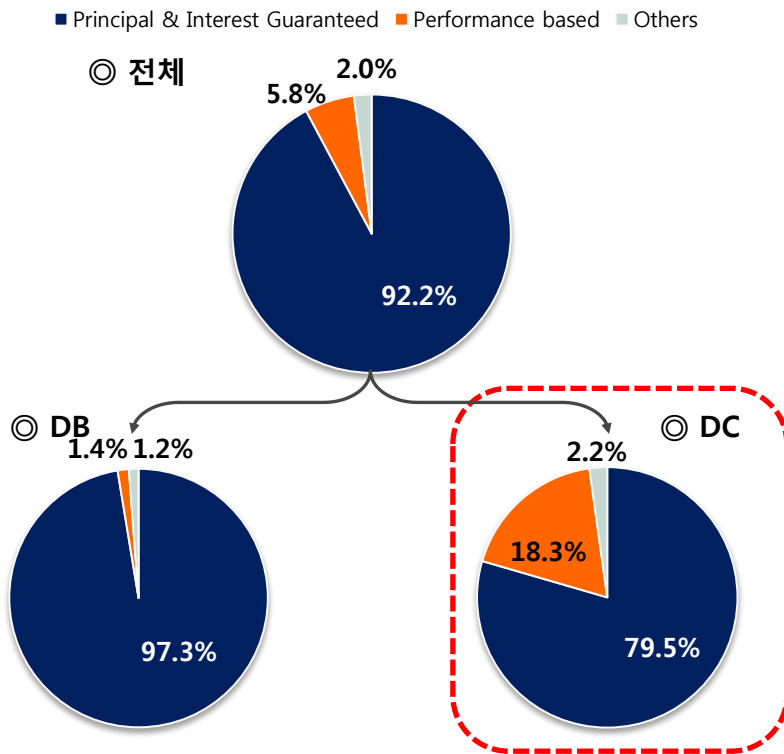


1. 근로자가 직면한 未來

I 퇴직연금 전체 자산의 92%가 원리금 보장상품

❖ DC의 경우에서도 약 80%가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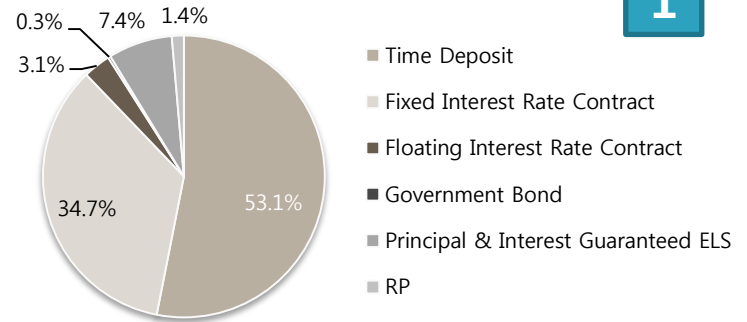
자산 배분 현황



출처: 금융감독원 퇴직연금통계, 2014년 12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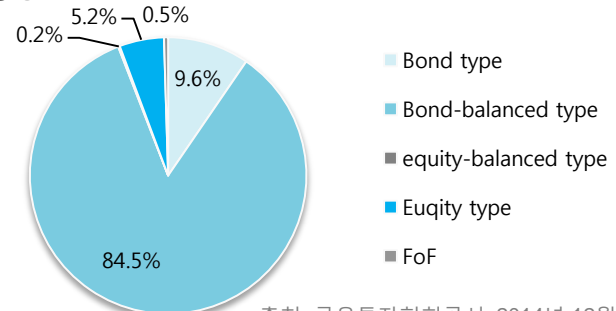
상품유형별 자산 비중

원리금보장형



출처: 금융감독원 퇴직연금통계, 2014년 12월 기준

실적배당형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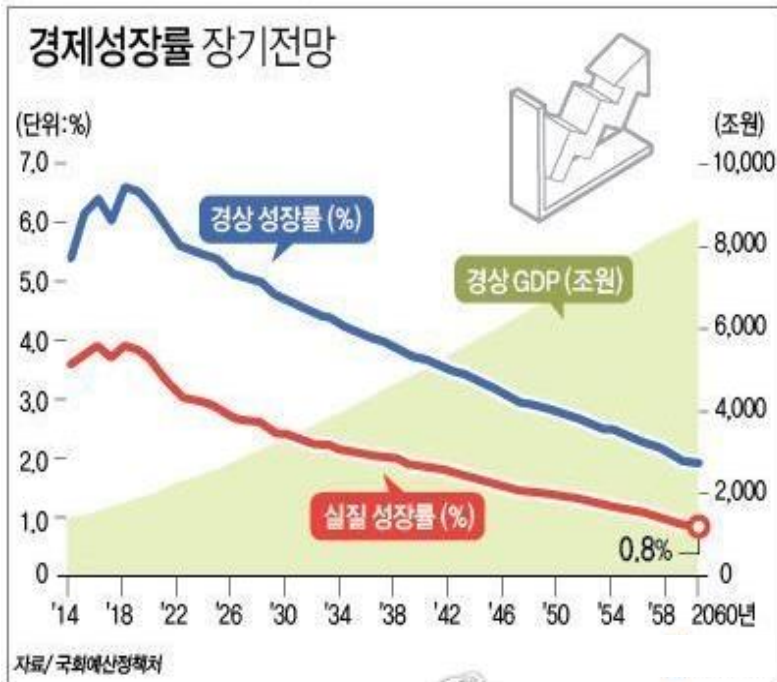


출처: 금융투자협회공시, 2014년 12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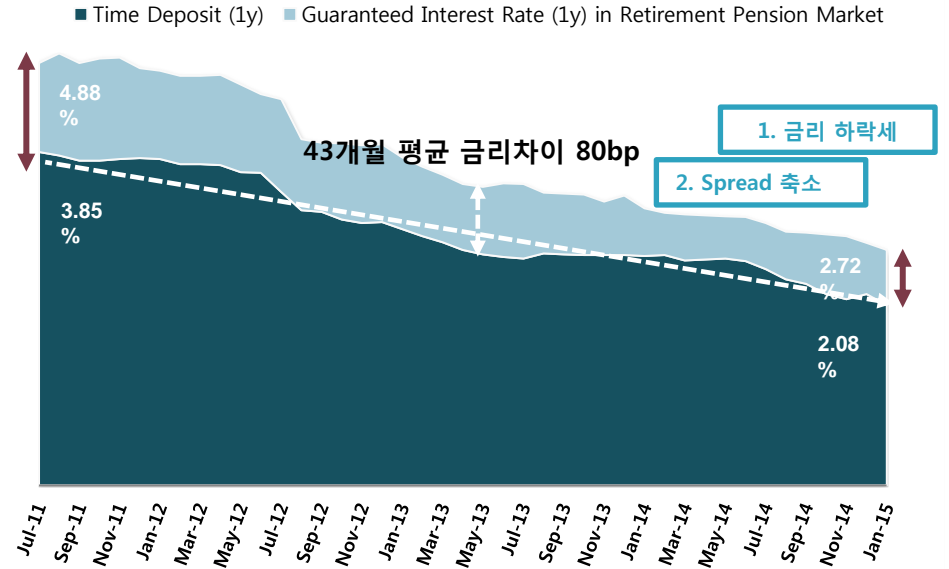
1. 근로자가 직면한 未來

I 지속적인 低성장 기조와 超저금리 시대 도래

- ❖ 고령화의 급진전으로 성장동력의 상실 → 필연적인 저금리 시대
- ❖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은 일반 예·적금 금리보다 평균 80bps 가량 높은 금리 제시
- ❖ 그러나 ① 퇴직연금 원리금보장 금리 및 ② 일반금리-퇴직연금원리금, S/P 모두 하향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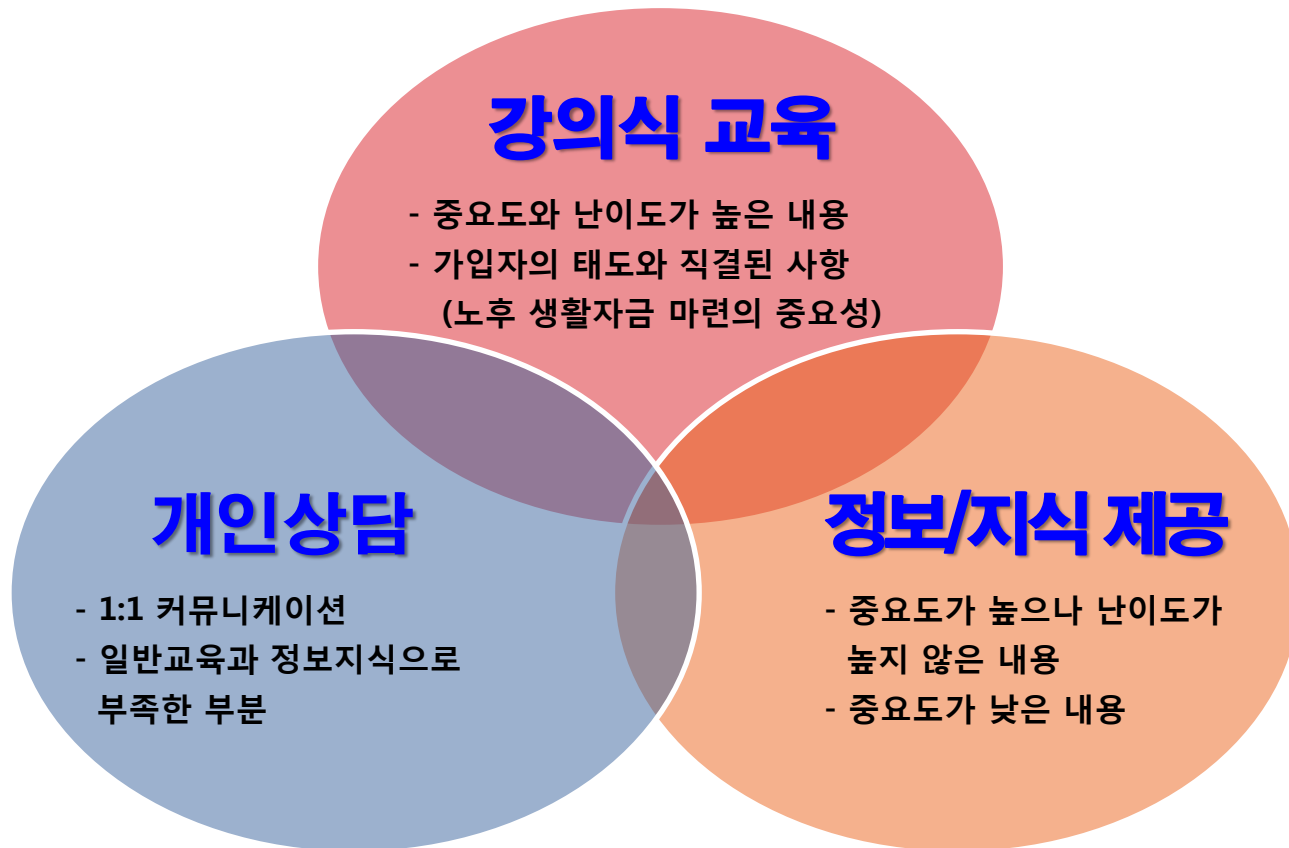
일반 정기예금 금리 vs. 퇴직연금 원리금보장 금리



• 시중 예/적금: 각 시점에 시중은행에서 제공된 수신금리의 가중평균
 • 퇴직연금 원리금보장 금리: 50개 사업자가 월 별로 제공한 금리의 단순 평균

2. 가입자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I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의 3대 영역



출처: 퇴직연금가입자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방안 연구보고서 (2006.12월 김근수 외 3명)

2. 가입자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I 現實(위기)과 實質(형식), 效果(변화)를 감안한 가입자교육化

AS IS

1. 형식적 가입자 법정교육
2. 퇴직연금 중심 교육
3. 독립적 법정교육
4. 획일적 법정교육
5. 퇴직연금 사업자 위탁방식
6. 은퇴교육 컨트롤타워 부재



TO BE

1. 실질적 가입자 법정교육
2. 은퇴금융 중심 교육
3. 사후관리 병행 은퇴교육
4. 맞춤형(법인/개인) 은퇴교육
5. 전문 교육기관 위탁방식
6. 은퇴교육 책임기관 설립

2. 가입자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노후준비 내실화를 위한 근로자 은퇴금융교육의 法制化 제안

1. 기존 「퇴직연금 법정교육」 → 「근로자 은퇴금융교육」으로 확대
2. 기존 「선택적 교육 방법」 → 「직·간접적 혼합교육 방법」으로 전환
3. 3가지 형태 교육방법 규정 : ①단순 정보전달, ②강의식 교육, ③개인상담
 - 단순 정보전달 : 現 퇴직연금 법정교육 수준으로 제도일반, DB/DC 특성, 적립금 운용 정보 전달
 - 강의식 교육 : 연 1회 이상 은퇴금융에 대한 제반 커리큘럼에 따른 집합교육 의무화
 - ✓ 퇴직연금을 포함한 은퇴금융 관련 제반 커리큘럼 포함
<예시> 再취업, 국민/퇴직/개인연금, 보험, 금융투자 및 거래방법, 노후 금융 주의사항 등
 - ✓ 근로자 연령에 따른 교육시간 차등 적용
<예시> 30代年 2시간 // 40代年 4시간 // 50代年 6시간
 - ✓ 우선적으로 300人 이상 대기업 우선 적용, 점진적으로 퇴직연금 가입법인 전체 적용
 - 가입자 개인상담 : 은퇴금융 상담 콜센터 운영 의무화, 기업체 정기 방문상담 의무화

2. 가입자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I [참고] 해외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현황

- ❖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 → 超 고령사회로 변화하는 **대한민국의 특성을 반영**,
- ❖ 선진국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보다 **강화된 제도적 요건 필요**
 - ✓ **일 본** 65세 ↑ 인구비율 ('70년) 7%, 고령화 사회 → ('94년) 14% 고령, 24년 → ('06년) 20% 초고령, 12년
 - ✓ **미 국** ('42년) 7% 고령화 사회 → ('15년) 14% 고령, 73년 → ('36년) 20% 초고령, 21년
 - ✓ **영 국** ('29년) 7% 고령화 사회 → ('76년) 14% 고령, 47년 → ('26년) 20% 초고령, 50년
 - ✓ **한 국** ('00년) 7% 고령화 사회 → ('18년) 14% 고령, 18년 → ('26년) 20% 초고령, 8년

미 국

- 강제규정 X
- 투자교육과 투자조언을 구별하는 Guideline
- 수탁자책임 차원의 간접적 가입자교육 유도

일 본

- 가입자교육 법적 의무화
- 단, DC형만 규정
- 퇴직연금 교육관련 자격 제도 운영 中
- 온라인교육 중심

영 국

- 강제규정 X
- 단, 공적기관 TPAS, FSA가 노후준비 교육 담당
- 공적기관인 Pension Ombusman에서 민원해결

출처: 퇴직연금가입자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방안 연구보고서 (2006.12월 김근수 외 3명)



III. 바람직한 가입자교육 사례

1. 은퇴금융교육의 가치정립

직장인이 **일**을 하는 궁극적 목표는
富 = financial wellness

직장인에게 富는 현재보다는 **미래**의 개념(소비하지 않고 모아야 가능)

- 모으고 굴린다는 개념으로 접근 But,
 - 정보의 홍수 속 오히려 정보 소외 or 적절한 투자법 선택 난해
- 미래의 불투명한 종착점인 은퇴 후까지 생애 재무설계 필요

2. 기업체별 주요 은퇴금융교육

유형	(기업) 임직원 대상 가입자교육		(기업) 은퇴예정자 대상 가입자교육	
	기업체 명	제공 내용	기업체 명	제공 내용
묶음 교육	A전자	-임직원 대상 사내 금융교육 제공 년간 계약 온/오프라인 교육 제공	H공사	1박 2일 과정 2012년부터 진행 오프라인 8과정 제공
개별 교육	B통신사	-임직원 대상, 퇴직연금, 은퇴스케치북 (7개 기관, 485명 참석)	K공단	은퇴예정자 프로그램 (2박3일 과정) 중
	C운송사	-임직원 대상 월급관리, 퇴직연금 교육		재무파트 3과정 진행 (은퇴설계/부동산/상품)
	D제약사	-신입사원 대상 월급관리, 노후자금 준비		
	E운송사	-직원 대상 은퇴스케치북/ 월급관리의 달인 -임원 대상 은퇴소득관리/부동산/절세	L식품	은퇴예정자 프로그램 제안(2012.03)
	F언론사	-직원 대상 은퇴스케치북/ IRP 교육		2013년부터 현재까지 진행중
	G공사	-직원 대상 은퇴스케치북/ IRP 교육		

4. 퇴직연금 가입자 필요사항

1. DC가입자 본인 수익률에 대한 정보

- ❖ 가입자가 찾아 보는 것(X), 알아서 알려주는 것(O)
- ❖ 각종 매체를 통해 주기적인 정보제공

2. 은퇴자산운용, 금융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식 공급

- ❖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다양한 은퇴금융 정보제공
- ❖ 기업체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제공



생애주기	교육 내용
미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급 ● 연말정산
신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관리 초기 플랜 ● 목돈 만들기 전략 ● 은퇴준비
자녀출산 및 양육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마련 ● 생애설계 ● 자산 증식 플랜 ● 은퇴준비
자녀 성년기 은퇴 준비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퇴준비 ● 연금 ● 부동산

4. 퇴직연금 가입자 필요사항

3. 알아서 해 주는 자산관리서비스

- ❖ 일임운용서비스, 수시 상품변경 안내, 고객상담 등

4. 찾아가는 퇴직연금 자산운용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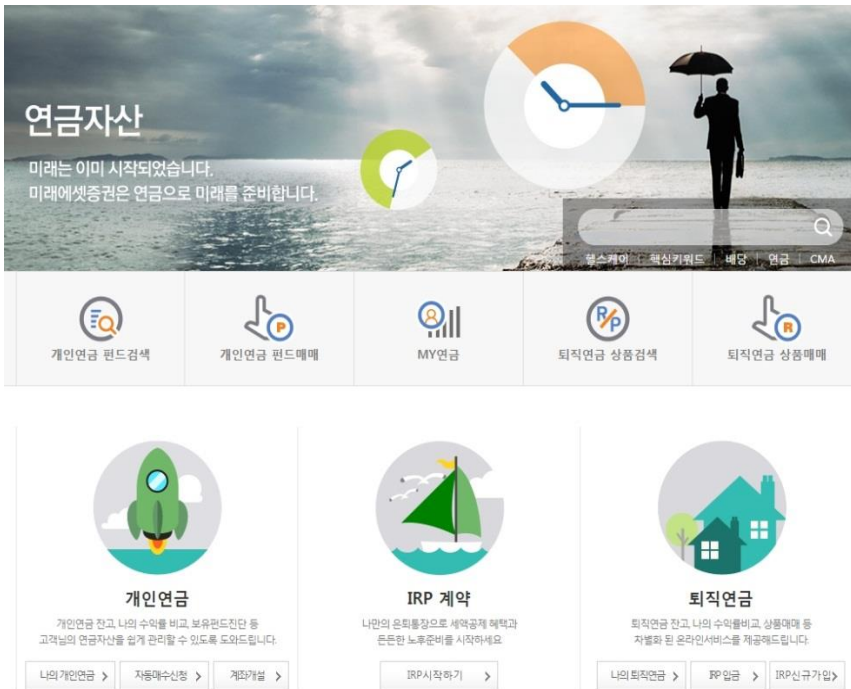
- ❖ DC 도입법인 대상 정기, 非정기 퇴직연금 상담 및 업무처리 부스 운영
- ❖ 금융서비스이동카를 활용한 사업장 방문 업무처리



4. 퇴직연금 가입자 필요사항

5. 사용하기 편리한 온라인 환경

- ❖ 홈페이지, 모바일을 통한 편리한 자산관리시스템 제공
- ❖ 예상 연금기간 시뮬레이션, 선진 자산배분 투자지원 등, 모든 정보와 처리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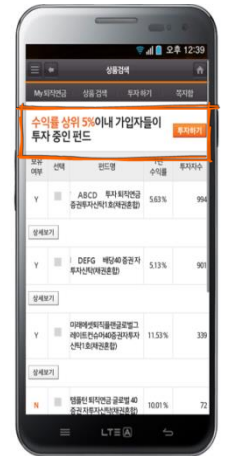
한눈에 확인!



상품 변경!



따라하기!



4. 퇴직연금 가입자 필요사항

6. 단순 교육이 아닌 지속적인 자산관리서비스 병행

- ❖ 임직원 금융고민 해결 프로그램
- ❖ 콜센터, 상담부스를 통한 문제해결

Post-retirement Consulting

연금자산 종합 Planning
퇴직연금 자산배분 제안

Financial Consulting

개인별 재무현황 분석
금융투자 설계

Advisory Consulting

세무 / 부동산 / 법률
전문인력 상담



02) 1234 -5678



금융상담전문가



컨설팅 전문가

퇴직연금 가입법인에 요청사항



우리회사 DC 퇴직연금 운용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

상품변경, 업무처리를 위한 정기 퇴직연금 부스 운영 검토

사업자가 수시로 퇴직연금 운용관련 정보를 전달토록 요청

근로자 법정교육 시 금융교육 편성, 사업자 요청

기존 DC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주기적 평가 필요

Q&A

감사합니다